

부산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733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20. 6. 2.

판결 선고 2020.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72,66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 1) 원고는 양산시 C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D 등)에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E호, F호'라 한다)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3. 6. 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원고가 이 사건 E호, F호를 낙찰받을 당시 위 호실에 관하여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거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 3) 피고는 의사로서 2016. 12. 6.부터 2019. 6. 18.까지 이 사건 E호, F호를 포함한 위 C 건물 3층, 5층부터 7층에서 'G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E호, F호를 입원실 등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였다.
- 4) 이 사건 E호, F호에 관한 2016. 12. 6.부터 2019. 6. 18.까지의 임료의 합계액은 42,872,666원¹⁾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임료감정축탁 결과, 이 법원의 양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6.부터 2019. 6. 18.까지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E호, F호를 사용·수익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42,872,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단법인 I의 대표자 이사 J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J에게 매월 임대료 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E호는 J이 침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2016. 12. 6.부터 2019. 1. 초순경까지만 이 사건 F호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F호에 관한 부당이득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일부 채권은 상사시효인 5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상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의료행위의 특성상 피고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행위를 두고서 영업 또는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의사인 피고를 상인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어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사용·수익 개시일인 2016.12. 6.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5.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명백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현

별지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양산시 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및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112.52㎡

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양산시 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및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102.90㎡

1) = 2016. 12. 6.부터 2017. 12. 5.까지 16,680,000원 + 2017. 12. 6.부터 2018. 12. 5.까지 16,800,000원 + 2018. 12. 6.부터 2019. 6. 18.까지 9,392,666원[= 1,460,000원 × (6개월 + 13/30일) 원 미만 버림]

